

| | | |
|----------|------|-------------------------------------|
| 의안 번호 | 2327 |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8. 2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화)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중구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울산중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 울산중구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그 밖에 울산중구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다. 근거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동학)

-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한부모가정 증가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각 가족의 요구와 필요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족사업 영역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